

소방안전관리규정

제정 : 1995.03.01
개정 : 1998.05.01
개정 : 1999.10.18
개정 : 2001.03.01
개정 : 2006.03.01
개정 : 2008.12.17
개정 : 2011.11.22
개정 : 2017.07.01
개정 : 2020.03.01
개정 : 2021.12.01
개정 : 2022.10.0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한 소방안전관리 업무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대원대학교(이하 “본 대학교” 이라 한다) 자체의 화재를 예방, 경계 또는 진압하여 인명과 재산을 화재로부터 적극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 05. 01., 1999. 10. 18., 2008. 12. 17., 2011. 11. 22., 2017. 07. 01., 2021. 12. 01.>

제2조(적용범위) 본 대학교 내의 모든 건축물과 전 교직원, 학생 및 출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지휘감독) ① 이 규정에 의한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대무자는 해당 직무와 관련하여 전 교직원, 학생 및 출입자를 지휘통솔 할 수 있다. <개정 2017. 07. 01.>

② 대무자는 소방 설비기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방화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한다.

제4조(소방안전관리자의 책무)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6항(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01.>

1. 소방계획서의 작성
2. 자위소방대의 조직
3. 피난시설 및 소방안전관리시설의 유지·관리 <개정 2017. 07. 01.>
4. 소방훈련 및 교육

- 5. 소방시설 그 밖의 소방 관련시설의 유지·관리
- 6. 화기취급의 감독
- 7. 그 밖의 소방안전관리상 필요한 업무 <개정 2017. 07. 01.>

제2장 화재의 예방

제5조(소방시설의 점검) ① 본 대학교 소방시설의 점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소방시설의 자체점검 등),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자체점검기준)에 의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1. 12. 01.>

②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경우는 점검결과를 2년간 보관하고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경우는 30일 내에 점검결과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7. 07. 01.>

제6조(소방훈련 및 교육) ① 본 대학교는 전 교직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되,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한다. <개정 2021. 12. 01.>

②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소화, 화재통보, 피난 등의 요령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한다.

③ 소방훈련 및 교육의 시기와 강사는 매 학기 초에 결정하여 실시하며, 교육일지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강사는 필요 시 전문기관에 의뢰 초빙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1. 12. 01.>

제7조(소방시설의 정비보완) ① 관할 소방서 및 점검 대행자의 점검결과 지적된 고장 또는 기준미달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 또는 단기에 단계적으로 보완조치하고 관계자에게 보고한다.

② 자체점검결과 고장 또는 성능미달인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총장에게 보고하고 즉시 정비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소방시설의 공사 또는 정비를 하여야 할 때에는 소방설비공사업 등의 면허증 소지자를 선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01.>

④ 소화기 관리서류를 작성하여 소화기를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화기 사용제한) ① 증축, 개축, 수선 등의 공사 및 지하공동구 내에서 용접작업 또는 기타 사유로 화기를 취급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이를 통보한 후 화재 예방상 필요한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12. 01.>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소방안전관리자는 화기취급 예정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화

재 예방상 현저하게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지구별 화기 취급현장에 감독자를 지정 운영하여 안전조치를 취한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한다.

③ 임시 또는 건조주의보 발령 시 화기를 취급함에 있어서는 소방안전관리자나 화기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④ 지하공동구 내 화기취급 작업 시 소방서 상황실에 사전신고를 하여 만전을 기한 후 작업에 착수하며 신고담당자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21. 12. 01.>

⑤ 담당 부서는 사무처 사무팀, 신고담당자는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보조원으로 한다. <개정 2017. 07. 01., 2020. 03. 01., 2022. 10. 01.>

제9조(통제 및 제한구역 지정) 본 대학교 화재 예방상 인원 출입의 통제 및 제한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운영한다. <개정 2021. 12. 01.>

지정구분	구역명칭	통제 및 제한경고내용
제한구역	수·변전실	관계자 외 출입금지
	통신실	"
	기관실	"
통제구역	디지털정보원 기계실	"

제3장 화재의 진압

제10조(소방훈련) 본 대학교에서 실시할 소방훈련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종류	내용
기초훈련	소화기, 옥내 소화전, 기타 소화활동에 사용되는 설비나 기구 등의 사용 (취급 요령을 익히는 훈련)
부분훈련	지휘, 통보, 연락, 소화, 피난유도, 방호, 응급구호, 소방대유도 등을 개별적으로 익히는 훈련
종합훈련	부분훈련을 각 임무별로 동시에 종합해서 행하는 훈련 (실제 화재에 즉각 대처하기 위한 조직적인 훈련)
도상훈련	화재 진압작전도에 의하여 행하는 훈련

제11조(화재발생시의 행동요령) ① 본 대학교에서 근무하는 전교직원 및 학생은 평소 화재를 감지하는데 신경을 써야 하며 누구든지 화재의 발생사실을 최초로 목격한 자는 119신고, 구내전파, 초기 소화 등의 초동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01.>

② 화재발생 사실이 구내에 전파되면 평소 편성 운영 중인 자위소방대의 분대 또는 반별로 개별임무를 즉각 수행하여야 한다.

제4장 소방안전관리일반

제12조(소방현황 및 필수서식의 작성유지)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법」, 「동법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 의한 법정서식대로 소방관계 현황을 작성·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01.>

제13조(공문서 및 부책의 보존관리)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관서로부터 접수된 공문서와 규정에 정한 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상 필요한 부책을 성실히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07. 01.>

제5장 벌 칙

제14조(명령 및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조치) 본 규정에 정하여진 사항이나 기타 방화관리 업무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명령 및 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는 자체 내규에 의한 징계 또는 인사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개정 2021. 12. 01.>

부 칙

이 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교명변경) 본 대학교의 교명을 대원전문대학에서 대원공과대학으로 변경한다.<개정:2020.03.01>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② (교명변경) 본 대학교의 교명을 대원공과대학에서 대원과학대학으로 변경한다.<개정:2020.03.01>

부 칙

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② (교명변경) 본 대학교의 교명을 대원과학대학에서 대원대학으로 변경한다.<개정:2020.03.01>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② (교명변경) 본 대학교의 교명을 대원대학에서 대원대학교로 변경한다.<개정:2020.03.01>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3572호 공포일자 : 2012. 01. 31. 방화관리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명칭 개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037호. 2011.08.04. 2012.02.05. 시행]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